

# 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68,961,134	14,068,834
일반회계	451,047,863	13,531,436
특별회계	17,913,271	537,398
기타특별회계	17,913,271	537,39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96,771	17,90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3,546	1,006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7,454,190	223,626
지하수관리특별회계	940,237	28,207
주차장특별회계	8,888,527	266,65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059,60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재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   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→군      기금→기      시비→시      특별교부세→특세

특별조정교부금→특금